

공 고

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6. 20.

문 화 재 청



<행정처분 내용>

성명	자격종목 (자격번호)	처분의 내용	처분의 사유 및 근거
홍승호	화공 제1566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백상종합건설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
강동수	한식석공 (쌓기석공) 제2300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백상종합건설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한영식	화공 제2309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백상종합건설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이윤희	번와와공 제3531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백상종합건설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